



뉴욕주  
법무장관실

뉴욕 주지사  
사무실



Letitia James | 법무장관

Kathy Hochul | 주지사

# 뉴욕주 주지사실 및 법무장관실 공동 민간 및 비영리 단체 지침

2025년 2월 14일

## 서문

이 지침 문서는 사회복지 기관 및 제공자(노숙인 보호소,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소, 기타 거주 시설뿐만 아니라 비거주형 및 방문형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 포함), 교회, 회당, 모스크, 사원 등 종교 시설, 의료 및 보건의료 시설, 그리고 지역사회 서비스 및 공간을 제공하는 기타 기관 등 민간 및 비영리 단체에게 거주자, 이용자, 환자, 회원, 직원 등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연방 이민 당국의 요청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검토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지침은 법적 자문을 구성하지 않으며, 모든 잠재적 상황을 상세히 다루거나 지역 법령 및 정책의 차이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기관의 행위에 적용되는 법률, 규정, 정책, 계약 조건 및 기타 고려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거나 기관의 상황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조직의 법률 자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침은 민간 또는 비영리 시설에 적용되며, 시(市) 또는 주(州)가 소유하거나 임대한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소유 재산은 행정명령 170.1의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별도의 학군 지침이 있으며, 행정명령 및 다른 자료들과 함께 이 문서 말미에 링크가 제공됩니다.

이 간략한 지침은 국토안보부가 연방 민사 이민 집행 활동으로부터 “민감한 장소”를 보호하는 이전 지침을 철회하도록 지시한 이후, 우리 사무실에 접수되는 질문과 요청이 급증함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본 지침의 목적은 각 기관과 단체가 자신들의 사명과 핵심 업무, 그리고 서비스 대상자들과 지역사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 Q: 이민 집행 조치가 우리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까?

**A:** 과거에는 국토안보부 정책에 따라, 이민세관단속국(ICE) 집행관 등 이민 집행 당국이 민사적 이민 위반과 관련된 체포나 기타 민사적 이민 집행 활동을 “민감한 장소”에서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이러한 민감 장소에는 학교(보육시설에서부터 대학 및 대학교까지), 의료 및 보건의료 시설, 교회, 회당, 모스크, 사원 등 종교 시설, 아동보호시설이나 위탁보호시설 등 아동이 모이는 장소, 그리고 “위기센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소, 피해자 지원센터, 아동옹호센터, 감독 면회센터, 가정사법센터, 지역사회 기반 단체, 장애인 지원 시설, 노숙인 보호소, 약물 또는 알코올 상담 및 치료 시설, 푸드뱅크나 무료 급식소 또는 기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식량이나 생필품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시설”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장소는 미국에 합법적 체류 자격이 없는 개인을 포함한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공간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호받았으며, 이 정책은 지역사회의 건강과 복지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국토안보부는 최근 이러한 정책을 철회하였고, 집행에 관한 결정을 개별 집행관에게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민 당국이 민감한 장소 내부나 그 인근에서 체포를 시도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권한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행사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또한 이민 당국이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다양한 방식(예: 전화나 이메일, 소환장 또는 영장을 통한 요청)을 통해 요구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 Q: 그렇다면 이제 우리 기관이나 단체는 이민 집행에 반드시 협조해야 합니까?

**A:** “민감한 장소” 정책의 철회가 기존의 이민 집행 권한에 대한 제한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관이 반드시 이민 집행관을 시설에 들여보내거나 이민 집행과 관련된 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민간 및 비영리 단체는 특정한 상황에서 협조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본 지침에서 다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유재산은 수정헌법 제4조에 의해 보호되는데, 해당 조항은 이민 집행관의 행위를 제한하고 “불합리한 수색 및 압수”로부터 보호합니다. 또한 개인은 수정헌법 제5조에 따라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에 더해, 각 기관의 고객, 환자, 거주자 등은 해당 기관의 상황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지방, 주, 연방법상의 권리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민 당국이 일반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더라도, 각 기관에 요구하는 특정 정보는 HIPAA, FERPA, 또는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 특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습니다.

## Q: 우리 기관이나 단체는 시설 내 특정인을 찾으려는 이민 집행관의 출입을 허용해야 하나요?

**A:** 시설의 공용 구역과 비공개 구역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설 내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구역(안내 데스크나 로비, 주차장 등)이 있는 경우, 이민 집행관은 일반 대중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해당 구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역에서는 일반 대중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규칙이 해당 집행관에게도 적용됩니다. 만약 이민 집행관이 방해하거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경우, 기관 직원은 집행관의 이름과 배지 번호, 그리고 기관의 업무 수행 능력에 미친 영향 등을 포함하여 해당 행위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 직원은 집행관에게 현장에서 업무가 방해받고 있음을 알리고 떠나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관에 일반 대중에게 개방되지 않은 비공개 구역(사무실, 환자 진료실, 기숙사 공간, 거주자실, 사회복지사 사무실, 고객 상담실, 혹은 잠가두거나 “비공개(private)”라고 표시되어 비공개로 유지되는 구역 등)이 있는 경우, 직원은 이민 집행관이 유효한 사법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한 그러한 비공개 구역 출입을 허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법영장은 연방 판사가 서명한 문서입니다. 국토안보부, 이민세관단속국, 또는 법무부의 직인이 찍혀 있고 이민 집행관이 서명한 행정영장과는 다른 것입니다. (본 지침의 말미에 이러한 문서의 예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민 집행은 ICE 직원이나 기타 유형의 요원이 수행할 수 있으며, 그들은 신분을 명확히 밝히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시설이나 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접근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설명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직원은 누구를 은닉하거나 숨겨서는 안 되고, 이민 집행관에게 허위 진술을 해서도 안 되며,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저지하려 시도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집행관이 일반 대중에게 폐쇄된 구역으로 강제 진입할 경우, 직원은 침착함을 유지하고 발생한 일을 기록해야 합니다.

## Q: 우리 기관이나 단체는 시설 출입을 요구하는 이민 당국에 대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그러한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각 기관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권합니다. 해당 정책의 일환으로, 이민 집행관이 기관을 방문하거나 정보를 요청할 경우를 대비하여, 프론트라인 스태프(안내 담당자, 보안 요원, 관리 직원 등)와의 연락 창구 역할을 할 특정 관리자를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연락 담당자는 집행관의 요청과 제시된 문서(영장이나 소환장 등)의 유효성을 검토한 뒤, 신속하게 법률 자문과 상의하여 추가 지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 및 비영리 기관은 마련된 정책, 공용 구역과 비공개 구역의 구분, 그리고 사법영장과 행정영장의 차이에 대해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할 것이 권장됩니다.

## Q: 이민 집행관이 공용 구역에서 우리 기관이나 단체의 직원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까?

**A:** 예. 그러나 개인은 묵비권을 행사하여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대면으로 질문을 받는 경우, 직원은 자신이 자리를 떠나도 되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답이 “그렇다”라면, 자리를 피할 수 있으며 질문에 응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떠날 수 없다”는 답을 들은 경우, 직원은 변호사와 상담을 요청하고 그 외에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기관 직원이 이민 집행관의 질문에 답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어떠한 허위 진술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Q: 기관의 고객이나 거주자에 대한 정보 요청에 직원은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A:** 전화나 이메일부터 다양한 형태의 공식 소환장까지 여러 방식으로 정보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조직 및 단체는 전화와 이메일 계정을 모니터링하는 모든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모든 정보(특정인이 거주자, 환자, 고객인 경우 포함) 요청을 지정된 관리자에게 전달하고 법률 자문과 협의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의 사적 정보를 무단 또는 불법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단체가 임의 정보 요청을 받는 경우, 지정된 관리자는 해당 요청에 응하는 것이 주 또는 연방법상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지, 그리고 요청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서비스나 지원을 제공하는 해당 기관의 핵심 사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직원은 이민 집행관이 제시한 문서의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요청이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 기관 직원은 해당 요청을 기록해야 합니다.

기관이 소환장이나 기타 정보 요구를 받은 경우, 반드시 기관의 법률 자문에게 전달하여 대응 방법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문은 경우에 따라 소환장에 응답할 것을 권고할 수도 있고, 소환장이 어떤 면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응답을 시도하기 전에 소환장을 기관의 법률 자문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가 자료

- » 행정명령 170.1: [https://www.governor.ny.gov/sites/default/files/atoms/files/EO\\_170.1.pdf](https://www.governor.ny.gov/sites/default/files/atoms/files/EO_170.1.pdf)
- » 바이든 행정부 DHS 보관 메모랜덤: <https://www.dhs.gov/archive/news/2021/10/27/secretary-mayorkas-issues-new-guidance-enforcement-action-protected-areas>
- » 트럼프 행정부 DHS 지시문: <https://www.dhs.gov/news/2025/01/21/statement-dhs-spokesperson-directives-expanding-law-enforcement-and-ending-abuse>
- » 뉴욕주 주지사실, 뉴욕주 법무장관실 및 뉴욕주 교육부 지침: <https://www.nysed.gov/sites/default/files/oag-go-sed-immigration-students.pdf>
- » 전국 이민법 센터 팩트시트: <https://www.nilc.org/resources/factsheet-trumps-rescission-of-protected-areas-policies-undermines-safety-for-all>
- » 뉴욕 공익 변호사단 및 뉴욕 변호사 연합의 비영리단체를 위한 표준 프로토콜: <https://www.nylpi.org/wp-content/uploads/2025/01/Guidance-to-Nonprofits-Regarding-Immigration-Enforcement-1.pdf>